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등〉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656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5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8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 20.
- (3) 회 부 일 : 2025. 1.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인력 양성과 공급이 필수적임.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독선적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의료대란이 야기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급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심의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체계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 양성 규모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현행법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와 수요자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 논의를 통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회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사항 및 위원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u>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u> 둘 수 있다.	④ ----- ----- ----- ----- <u>분과위원회</u> <u>또는 특별위원회를</u> -----.
⑤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u>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u> 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 <u>실무위원회·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u> ----- -----.
<u><신 설></u>	<u>제21조의2(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 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의 수급추계를 위하여 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직종별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1. 해당 의료인력의 국가 단위 수급
전망

2. 해당 의료인력의 지역 단위 수급
전망

3. 해당 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
정원 규모(전국단위 및 시·도단
위 정원 규모를 말한다)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특별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심
의함에 있어 진료권별·진료과목별
·공공의료부문별 해당 의료인력의
수급 전망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
영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1항의 보건의료 직종별 공급자
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
명

2. 제1항의 보건의료 직종별 수요자
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가 추
천하는 사람 7명

3. 보건의료 또는 인력수급추계에 관
한 전문가로서 제1호와 제2호의
단체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
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4.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신설>	<u>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각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u> <u>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u> 제22조(위원회의 기능)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u>의료인력 수급관리정책</u> 6. (현행 제5호와 같음) <u>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u>
시행일: 공포한 날	

2. 검토의견

□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학생 정원의 결정구조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는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제4항1)에 따라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한약사 인력 양성에

- 1)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①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후단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5. (생략)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련되는 대학의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의료인력 등의 총 수요를 정하여 통보하기 전에 통상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²⁾(이하 ‘보정심’)의 심의를 거치고 있음.

- 관련 법령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과 관련한 인력수요를 결정할 때 보정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의사결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며,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 정원’에 관한 사항을 보정심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도 아니함.

□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등에서 제기된 의료인력수급의 과학적 추계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세부 구성 방안”(‘24.9. 30.)을 발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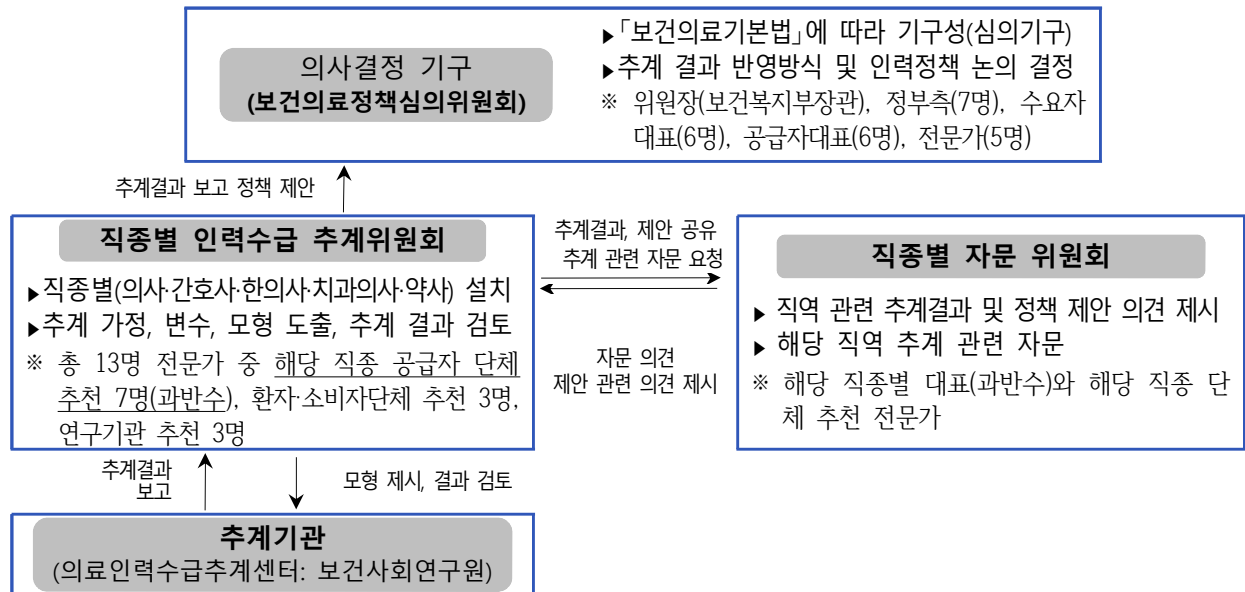
이는 ‘보정심’은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추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추계모형 도출, 추계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고, ‘추계기관’(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전문적 추계 작업을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 내 의사결정구조를 보완하려는 것임.

2)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발전계획
2.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3. 주요 보건의료정책
4.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논의기구 간 역할 및 구조 >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재구성

□ 개정안은 보정심 심의를 거치기 전에 수급추계특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20명 이내의 수급추계위 위원 구성 중 보건의료 직종별 공급자 단체 추천 7명, 보건의료 직종별 수요자 단체 추천 7명, 보건의료 또는 인력수급추계 전문가 4명으로 정함으로써, 사회 각계로부터의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적·전문적 심의를 보장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 적용 직종의 범위는 의사·간호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의 5개 직종에 적용하려는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세부 구성방안”에서 약사를 제외한 4개 직종임.

□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세부 구성방안”에 따른 ‘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수급추계위의 설치 근거와 심의사항 등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수급추계위의 역할 및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바,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수급추계위원회를 심의위원회 산하 자문기구가 아닌 자율적·독립적 의결기구로 구축하고, 의료전문가 중심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도 보건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중 호선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³⁾

□ 한편, 2024년 9월 제정된 「간호법」이 2025년 6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추어 안 제21조의2제1항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보완필요)

-

2) 대한의사협회(신중검토)

□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결정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 ▲의료전문가

3) 대한의사협회

중심의 위원 구성, ▲부칙의 특례조항 명시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도 개선 및 보완이 반드시 필요함.

-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독립성을 부여하고, 정부 주도의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구조에서 탈피하여 전문가 중심의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해야 할 것이며,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부여하여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논의 및 운영되어야 함.
- 경영측면 입장이 반영될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단체의 추천을 제외하고,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모두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운영상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되도록 수정이 필요함.
-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한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함.

문 의 처
02)6788-5494

【참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인적 구성
-------------	--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명단 (총 25명, 임기 2023.8.10.~2025.8.9.)

구 분	소 속	성 명	직 위
위원장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정부 (7)	기획재정부	김범석	제1차관
	교육부	오석환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
	환경부	이병화	차관
	고용노동부	김민석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수요자 대표 (6)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원영희	이사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진아	사무국장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김명호	의장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
공급자 대표 (6)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 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
전문가 (5)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박현경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병원	임재준	공공부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정성철	교수

* '24.2월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당시 기준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총 25명, 임기 2021.1.27.~2023.1.26.)

* 제2기 위원 미구성

- 총 25명 (수요자단체 5명, 공급자단체 13명, 전문가 3명, 공무원 4명)
- 임기: '21.1.27. ~ '23.1.26.(2년간)

구분	소속	성명	직책
위원장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정부 (3)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기획재정부	이대희	경제구조개혁국장
	교육부	최은희	고등교육정책과
수요자 대표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신승일	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	신현호	부의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공급자 대표 (13)	대한의사협회	정재원	정책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창주	치무이사
	대한한 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병진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대한안경사협회	윤일영	윤리이사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윤종근	회장
	대한영양사협회	김혜진	회장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전문가 (3)	서울대학교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